

2026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가 공모 (문화예술연수단원 지원사업)

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예술계 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, 약 34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「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」 추가 공모를 추진합니다. 이번 지원을 통해 활동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예술단체 및 기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□ 사업목적

- 창작·실연 중심의 긴급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예술 활동 위축 및 침체를 방지하고 생태계 지속가능성 및 활력 제고
- 문화예술분야 청년 취업기회 및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, 위기 시기에도 단절 없이 전문인력으로서의 성장을 지원
- 청년인력 고용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, 대내외적 위기에도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 환경을 조성

□ 지원내용

- 문화예술 분야 전공 졸업자인 연수단원 신규채용 인건비 일부지원
- 지원 기간 : 2026년 7월~12월(6개월)

□ 지원규모 : 1명당 민간 12.96백만원, 공립 11.76백만원 지원

※ 단체당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까지 '창작·실연' 직종만 지원 가능(기획, 행정 제외)

구분	지원개요		
지원인원	최대 4명		
1인당 지원내용	· 지원기간 : 2026년 7월~12월(6개월)		
	· 지원액 : (민간) 월 216만 원 / (공립) 월 196만 원		
	구분	지원금	단체 자부담
	민간	2,160,000원	-
공립	1,960,000원	200,000원	최소 급여액 2,160,000원
※ 최소 급여액 이상 단체 자부담으로 지급 가능 ※ 지원금 이외 자부담 : 4대 사회보험료(사용자 부담분), 회계검증 수수료, 추가 급여 등			

참고 : 연수단원 직무 구분

직군	직종	세부 직무
문화예술 연수단원	창작·실연	· 출판·제작 : 출판기획 및 제작, 교정, 교열, 번역 등 · 시각예술 : 큐레이터, 에듀케이터, 전시디자이너 등 · 실연분야 : 연주자, 성악가, 무용수, 배우, 전통연희, 컴퍼니매니저, 아키비스트 등 · 창작분야 : 연출자, 안무가, 작사가, 작곡가, 의상, 제작PD, 기술융합 창작자 등

□ 신청자격

- 신청 대상 : 단체
- 자격 기준 : 민간 문화예술단체 및 공립기관
 - 단체 대표자 제외 '상근인력 1명 이상'의 인력이 근무 중인 단체

구분	내용
단체조건	민간 예술단체 및 공립기관
지원인력	34세 이하(1991.1.1. 이후 출생자)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

□ 제외대상

-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안내 내 <지원신청 부적격자>에 해당하는 자

□ 신청기간

- 2026년 4월 27일(월) ~ 5월 12일(화) 15:00까지

□ 신청방법
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 (이메일, 우편, 방문 접수 불가)
 - ※ 지원신청 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 내 단체정보 업데이트 진행 필수

□ 제출서류

- (필수) 2026년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추가지원신청서
- (필수) 「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」
 - ※ 2026년 4월 공고일 이후 발급자료 제출(조회기간 : 2025.10.1. ~ 2026.4.26.)
 -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(<http://total.comwel.or.kr>) 발급자료 제출
 -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필수(산재보험, 예술인고용보험은 해당 없음)

□ **선정방법**

- 서류심의

□ **심의기준**

심의기준	평가항목	세부평가내용	가중치 (%)
신청주체의 사업수행역량 (50%)	활동성과 및 영향력	· 최근 3개년 신청단체의 예술활동 성과와 노력 · 단체의 주요 예술활동과 프로그램 수준은 우수한가? · 단체의 주요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은 우수한가?	20
		· 단체의 예술활동 계획 및 프로그램 수준은 우수한가? · 단체의 예술활동 계획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고, 예술인력 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?	20
	사업 수행인력의 적절성	· 단체는 2026년 주요활동 추진을 위한 조직과 구성원을 갖추고 있는가? · 단체는 신청인력 경력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또는 환경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?	10
인력운용 (40%)	인력운용 계획의 적절성	· 단체의 신청인력에 대한 직무(역할)는 타당하고 적절한가? · 단체는 신청인력의 경력개발, 전문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가? · 단체는 신청인력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?	40
고용환경 (10%)	고용안정 노력 및 사회적 책무	· [정량평가] 단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노력 · 고용안전을 위한 사업장 고용보험 자격취득 여부 · (필수제출)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※ 발급기준 : 공고일 이후 ※ 조회기간 : 2025.10.1. ~ 2026.4.26.	10

- ※ 정량지표는 단체에서 제출한 “고용보험 사업자 자격취득자 명부”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합니다.
- ※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의거, 지원신청 인력 중 장애인력 채용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 결정
· 연수단원의 경우 장애인 및 비장애인 1:1 매칭 지원 유지(장애인력 최대 신청 가능 인원수 2명)
* 예시) 장애인 1:1 매칭으로 단체에서 장애인력 2명 채용 신청시, 비장애인력 2명 지원 결정

□ **지원조건**

- e나라도움(www.bojo.go.kr) 시스템에서 지원금 집행·정산
- 채용인력 자격요건 준수 및 공개채용 원칙 준수 (※ 사업수행가이드 추후 별도 안내)
- 문화예술 연수단원 채용(※ 단체의 기존 또는 과거 근무자 채용 불가)
- 채용인원과 단체 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필수
- 채용인력 인건비는 2026년 법정최저임금(월 2,160,000원) 이상 지급 및 지원금 이외 금액은 단체의 자부담 필수
- 채용인력 4대 사회보험료 가입 의무, 추가 인건비는 사업자 자부담 필수
- 지원단체 대표자와의 직계가족(배우자 포함), 친인척(4촌 이내 혈족) 채용은 불가

- 문화예술 연수단원은 문예기금 타사업 및 중앙부처·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인건비 추가 집행이 불가. 근로소득분 추가수당 발생 시 자부담으로 집행
- 고용관련 법규 위반단체 및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체불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의 단체, 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단체는 확인될 시 보조금 교부 취소

□ 2026년 예산

- 3,435백만원
 -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추가지원 : 3,435백만원

□ 후속 지원

- 직무교육 및 진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

□ 문의처
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재양성팀
 - 문학, 무용, 문화일반분야 문의 : 02-760-4645
 - 시각, 전통분야 문의 : 02-760-4653
 - 연극·뮤지컬, 음악분야 문의 : 02-760-4663
 - * 문의 가능 시간 : 월~금 10:00~17:00(점심시간 제외)

지원신청 유의사항

[공통사항]

- ▶ 문화예술진흥기금 **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** 부탁드립니다.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